



LIFE & MISSION AGENCY
Canadian Ministries

Forming a Mission
2013년 11월

새로운 교회·사역지를 시작하는 일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노회가 새로운 사역지나 교회를 시작하려 할 때, 어느 기구에서 그 사역지나 교회를 보호 및 감독할 책임을 갖게 됩니까?

대답: 그 사역지나 교회를 보호 및 감독할 책임을 갖게 되는 기구는 노회입니다.

기본 원칙:

노회에 의해 시작된 교회·사역지는 PCC의 지체가 되며, PCC의 관할(governance)방식에 따라 일하게 됩니다.

교회·사역지는 궁극적으로 노회의 지도와 감독을 받게 됩니다

교회·사역지에서 복음 사역의 결실이 이루어지도록 노회가 힘이 되어 주며 지원해야 합니다.

노회의 관할이 이루어지는 형태 (Governance Options)

•노회에서 교회를 설립하는 경우:

교회법(The Book of Forms)에서는 노회의 관할지역 내에 있으며, '캐나다 장로교회의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겠다'고 분명히 선언하는 일군(一群)의 사람들이 한 교회를 시작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때 이를 노회에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합니다. 노회에서는 그 해당 사역지에서 적절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금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노회에서는 이러한 분별을 하는 과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며, 또한 성례가 집행되고, 새로운 교인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감찰하기 위하여 임시당회(assessor session)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때에 그 교회 내에서 장로가 선출되면, 선출된 장로가 임시당회의 장로가 감당하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임시당회는 노회에 보고를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임시당회에서는 관리위원회(board of managers)를 임명하거나, 재정업무를 담당할 재정부 혹은 관리부를 임시당회 내에 조직할 수 있습니다.

차후에, 교회를 운영할 재정이 더 이상 마련될 수 없게 된다면, 교회는 해산됩니다.

•노회에서 사역지를 설립한 후 사역을 감독하도록 임시당회를 임명하는 경우:

아직 교회가 정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궁극적으로 사역지를 관할하는 책임이 있는 노회와 해당 사역지의 중간고리 역할을 임시당회에서 맡게 됩니다. 임시당회에서는 성례의 집례·회의 개최·재정적 업무에 대한 승인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 교회로 설립되면, 임시당회에서는 ‘교회에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캐나다 장로교회의 교인이 되게 하는 권한’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사람들은 교인 명부에 등록됩니다.

•노회에서 사역지를 설립한 후 노회 내의 기존 위원회에 사역지를 감독할 책임을 주는 경우:

이러한 경우, 사역지를 감독하는 권한을 기존의 위원회에 부여하는 사실이 적절하고 명료하게, 또 필요한 내용이 빠짐없이 기술된 문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노회 내 선교위원회에서 □□교회의 세례에 대한 요청 및 성찬식 집례에 관한 승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한다. 선교위원회에서는 □□교회의 재정 담당자를 임명하고, 1년에 4 차례 재정에 관한 보고를 받아 이를 검토한다.”)

•노회에서 사역지를 설립한 후 운영위원회를 임명하여 사역지를 감독할 책임을 주는 경우:

노회에서는 운영위원회에 권한 이양을 분명히 해준다면 (이 사실을 자세히 기록한 문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노회에서 임시당회를 임명하여 일하는 경우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본 문서는 영어 원문에서 한국어로 번역된 것입니다. 위 번역된 문서와 영어 원 문서를 함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document has been translated from English to Korean. Where there is a discrepancy, the original English document will be consulted.